



특허청

# 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8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2. 6. 28.(화) 08:30
담당 부서	특허심판원	책임자	과 장 윤병수 (042-481-5879)
	심판정책과	담당자	주무관 최유영 (042-481-5282)

##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,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

-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, 6월 30일부터 시행 -

-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·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.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「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」 개정안이 시행(21.12.3. 개정)된다고 밝혔다.
  -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.
  - 개정안은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,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.
- 다만,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,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\*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.
  - \* 특허법 §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거절이유
  - 특허법 §42조 제3항 1호 발명의 설명의 불명확한 기재에 대한 거절이유
  - 특허법 §47조 제2항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거절이유 등

-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·실용신안의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, 심판청구 비중의 40%를 차지하는 개인·중소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
-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“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기를 바라며,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## □ 개정 주요내용

- 특허·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전체 청구항 수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 수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납부

(예시) 전체 청구항 92항 중 거절결정된 청구항이 28항인 경우 심판청구료  
(개정전) 기본료(150,000원) + 항별 수수료(15,000 × 92항) = 1,530,000원  
(개정후) 기본료(150,000원) + 항별 수수료(15,000 × 28항) = 570,000원

➔ 거절결정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수수료 납부 시 960,000원 절약

- 다만,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,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

(예시) 전체 청구항 1~10항 중 심사관의 거절결정이유가 아래와 같다면,

- ① 제29조제2항(진보성) : 1항, 2항
- ② 제42조제3항제1호(발명의 설명) :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

➔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은 2개 항(1, 2항)이나,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이유②에 따라, 전체 청구항(1~10항)을 기준으로 산정

- 심사전치 대상 심판사건\*은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청구항 보정이 가능하므로,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

\* 2009. 6.30. 이전 출원으로 최근 연 10건 미만 청구

(예시) 전체 청구항 30항 중 거절결정된 청구항이 15개이며, 심사전치 보정으로 심판청구시 청구항을 10개로 줄인 경우 심판청구료

➔ 심판청구시 청구항 수(10개)를 기준으로 하는 **현행 규정이 바람직**

- (시행) 2022년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